

—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개이상의 동에 걸쳐 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이 요구되고
-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구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모동 일부 (11필지 2,928.0m²) ⇒ 사곡동으로 편입
- 상모동 일부 (10필지 2,928.4m²) ⇒ 임은동으로 편입
- 임은동 일부 (31필지 62,415.8m²) ⇒ 상모동으로 편입
- 사곡동 일부 (42필지 21,112.3m²) ⇒ 상모동으로 편입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
-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 : 경상북도 자치행정과-5997 (2004.7.30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행정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사곡·상모·임은동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승인됨에 따라
- 상모동 일부지역 21필지중 11필지를 사곡동으로, 10필지를 임은동으로 편입하고, 임은동 일부지역 31필지와 사곡동 일부지역 42필지를 상모동으로 편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